

# 양형위원회 제8차 회의 결과

---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

## I. 회의 개요

- 일시 : 2008. 5. 27. 09:30 ~ 13:4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참석 : 위원장 및 상임위원 포함 위원 9명(신용진, 조건호, 하태훈  
위원 불참)  
전문위원 5명, 운영지원단장

## II. 진행순서

- 운영지원단 업무보고(단장)
  - 양형자료조사 최종 분석 보고
- 전문위원 업무보고
  - 주요 외국 양형제도 보고(수석전문위원)
  - 우리나라에 적합한 양형기준제 보고(이호중, 이주형, 손철우 전문  
위원)
- 토론회 개최계획안 의결(단장)

## III. 논의결과

### 1. 양형자료조사 최종 분석 보고

- 42,360건에 대한 양형자료조사 결과 보고

### 2. 주요 외국 양형제도 보고

- 미국에서 판사의 양형 도출과정에 도움이 되도록 개발하여 사용

중인 프로그램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수석전문위원에게) 미 연방 양형기준이 먼저 제정되고 각 주의 양형기준이 제정된 것인지 여부와 만일 그러하다면 각 주에서 연방의 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
  - ☞ 연방보다 늦게 기준이 제정된 주도 많이 있으며, 이들 각 주에서 연방식 기준을 그대로 채택하지 아니한 이유는 연방식에 대한 비판이 어느 정도 작용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

### 3. 우리나라에 적합한 양형기준제 보고

- 이호중, 이주형, 손철우 전문위원이 각자의 방안을 발표한 후 그 장단점을 중심으로 질의답변이 이루어짐
- (손철우 전문위원에게) 양형기준의 한계로 항소심의 양형지도적 기능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항소심에서는 양형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지에 대하여 질의
  - ☞ 미국에서도 양형기준 내에서 선고된 1심 판결의 합리성 추정 여부가 상급심에서 문제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같은 사안에 관하여 항소심이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지는 항소심의 재판사항에 속한다고 보겠음. 따라서 항소심에서 양형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을 전제로 보고한 것은 아니라고 답변
- (이주형 전문위원에게)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에 범죄전력이 들어가 있지 아니하고, 누범이나 상습범 기준은 법이 정한 요건 하에서만 엄격히 적용되는 사항임을 고려할 때 범죄전력을 형종과 형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반영하는 것은 우리 실정법의 기본원칙과 맞지 아니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이호중 전문위원에게) 양형기준 설정의 목적이 불합리한 양형편차의 해소에 있다면 양형인자를 계량화하지 않더라도 형량범위를 적절하게 조절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질의
  - ☞ 결국 개별사건에 있어서의 구체적 타당성을 얼마나 반영하느냐의 문제인데, 현황 분석 및 규범적 평가를 거쳐 특정 인자에 대한 계량화의 정도가 나온다면 그러한 인자들을 중심으로 수평축에 들어가는 인자 외에도 2~3개 정도는 등급조정 인자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라고 답변
- 발표자들이 각자의 방안에 따른 기준안을 만들어 위원회에 제시해 달라는 의견이 제시됨

#### 4. 토론회 개최계획안 의결

- 개최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됨
- 다만, 국민의 상식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전문가 그룹 외에 양형문제에 관심 있는 시민단체 관계자를 포함시켜 주기를 바란다는 의견이 제시됨

### IV. 제9차 회의 일정

- 일시 : 2008. 7. 8. 14:00
- 장소 : 대법원 제1601호 회의실
- 안건 : 우리나라에 적합한 양형기준제 3차 심의(의결안건) 등